

[판결비평] 2010-2

# 광장에 나온 판결



##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무죄 판결로 본 검찰의 수사권·공소권의 남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형사27부 2010. 4. 9. 판결, 2009고합1500, 1357(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공여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판사 김형두(재판장), 염경호, 박승혜

사법 분야에 대한 시민감시활동과 사법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의 판결 중 사회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판결 또는 그에 반대하여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고르고, 이 판결에 대한 비평 칼럼을 수록한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의 2010년 두 번째 비평대상으로, 지난 4월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와 광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 김형두 부장판사)의 1심 판결을 선정했습니다.

지난 4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 김형두 부장판사)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통상 그 결과가 주목 받았던 다른 판결들과는 달리 이번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은 그 결과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평가보다 검찰 수사와 공소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난 공판과정이 더 주목을 받았다.

이번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공판과정과 판결을 통해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제 등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 남용, 이를 통한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논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의 글 두 편과 한 전 총리 1심 공판 취재를 맡았던 이승호 기자(오마이뉴스 정치부), 금태섭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검사)등 세 명의 전문가로부터 이 판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담은 비평을 받아 소개한다.

아울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위원장 : 최강욱 변호사)는 지난 4월 14일 <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로 본 검찰권 남용 >이라는 주제로 판결비평 공개좌담회(인터넷 생중계)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 영상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블로그(<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와 한겨레 하나TV(<http://www.hanitv.com>)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다. <편집자 주>

## ‘침몰과 명예회복’ 기로에 선 검찰

하태훈 교수 (고려대 법학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아니나 다를까.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주말에 만난 몇 사람의 입에서는 ‘뭔가 있었겠지,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리고 덧붙였다. ‘도덕적 이미지, 타격 입은 거 아니냐?’ 이처럼 검찰에게 치욕적인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검찰은 판정승을 거둔 거나 마찬가지다.

검찰의 한 전 총리 흡집 내기와 이에 동조한 언론의 피의사실공표로 지방선거를 앞 둔 한 전 총리는 무죄의 승리만큼의 큰 상처를 입었다. 뇌물의 액수와 제공방법에 관한 공여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했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오찬장 의자에 돈을 놓고 나왔다는 주장은 기정사실화되어 많은 유권자의 기억에 잔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죄판결이 두려웠던 것일까. 무죄판결로 받게 될 비난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한 잔피였을까. 판결 선고를 앞둔 피고인을 돈이나 받아 챙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일까. 검찰은 선고 일을 하루 앞두

고 한 전 총리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아무리 이해당사자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개시 여부와 시점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어야 한다. 지난달부터 내사를 했다는 언론보도이고 보면 하루를 못 참아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압수수색을 할 것은 아니었다.

이것이 과연 김준규 검찰총장이 강조하던 ‘신사다운 수사’, ‘과거 관행에서 탈피하는 수사’란 말인가. 표적수사와 선별기소 등으로 ‘정치인’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만드는 권한 남용도 여전하다. 명백한 증거도 없이 돈을 건넸다는 사람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하고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유죄의 여론을 형성하려 애쓰는 모습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변한 것 없는 검찰의 모습이다.

공판중심주의 형사절차에 적응하지 못한 미숙함도 드러났다.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정

에서의 공격과 방어를 통해서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자백조서만으로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조서재판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를 답습했다.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은 기자회견을 통해 격앙된 어조로 재판부를 비난했다. 검찰이 아무리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브리핑을 해대도 진실은 흔들릴 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이 거악을 척결하는 정의의 사도처럼 보여도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져야 한다. 장외에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한 반칙행위다. 항소이유서와 항소심 법정에서 할 얘기를 언론에 퍼뜨리면 여론을 만들어 보려는 속셈으로 비춰진다.

‘주요 핵심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해 짜 맞춘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이 아니라 1심 공판절차를 되돌아보면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한다. 언제까지 언론과 여론에 기댈 수는 없을 것이다. 1심 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증거를 갖추어 반박하면 되고, 공여자의 진술이 강압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입증하면 될 일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의 담당 부장검사는 무죄판결의 치욕을 당하고서도 영전했던 선배검사들을 보면서 돈을 쫓다는 광씨의 진술 외에 물증도 없이 기소하는 공소권 남용의 유혹을 느꼈을 수도 있다. 대검 중수부 수사사건의 무죄비율이 높아지고 대형 정치적 사건에서 줄줄이 무죄판결이 내려지는데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면 죄 없는 자를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권 남용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미네르바 사건 등 무죄 사건을 맡은 검사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사후 평가 절차를 엄격히 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새로운 건으로 한 전 총리를 들어 쥐고 있는 검찰수뇌부는 침몰이나 명예회복이냐의 기로에서 진퇴를 결정해야 할 운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 □

※ 이 글은 2010년 4월 14일, < 미디어 오늘 >에 함께 실렸습니다.

## 국가는 증거로 말하라

하태훈 교수 (고려대 법학·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국가는 증거를 갖고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 말은 국방부와 언론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명백한 증거도 없이 부족한 관련 추정과 추측으로 몰아가자 대통령이 던진 주문이다. 이 주문의 메시지는 검찰과 법원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검사는 객관적 증거를 갖고 기소해야 하고 법원은 증거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검사는 주관적 혐의만으로 기소할 수 없다. 참고인의 입에 의존한 공소장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자신이 있을 때 기소해야 하는 것이다. 법원도 사실 인정은 증거로 해야 한다.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다.

오늘 한명숙 전 총리 수뢰사건의 유·무죄가 선고된다. 재판부가 공여자 광영욱씨의 오락가락한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분명한 것은 판결이 어떻게 나든 상관없이 이미 검찰은 판정승을 거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유죄가 선고된다면 검찰의 한판승이겠지만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얻은 게 적지 않다. 검찰의 한 전 총리 흠집 내기와 이에 동조한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로 지방선거를 앞둔 한 전 총리는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뇌물의 액수와 제공 방법에 관한 진술이 오락가락했지만 이미 오찬장에 돈을 놓고 나왔다는 사실은 기정사실화되었으므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증거가 없어서 그럴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골프채와 골프블리지의 선입견 효과 때문에 ‘뭔가 있었겠지’라는 인상은 잔상으로 남아 있다.

### 검찰, 한 전 총리 흠집내기 판정승

요즘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기소 자체만으로 성과를 거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의 무리한 형사범죄화 시도로 국민들이 정부 정책 비판을 주저하게 되고 표현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수사받을 것이 두려워 자기검열을 하기도 한다. 무죄판결의 치욕을 당하고서도 영전하는 선배 검사들을 본 담당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광씨의 진술 외에 물증도 없이 기소하는 공소권 남용의 유혹을 느꼈을

수도 있다. 돈을 건넨 사람이 처벌될 위험을 무릅쓰고 자백을 했다는 것도 석연찮은 일이지만, 번복 가능성이 농후한 진술만 믿고 기소하다 보니 공판절차 내내 검찰은 광씨의 입만 쳐다보는 애처로운 꼴을 보였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공소 제기의 기본도 지키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는 수도도 당했다. 범행의 방법은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증뢰자가 건넸다는 사실만 있지 어떻게 받았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다. 부실수사이니 공소유지도 무리였음은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검찰은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탈법을 행하고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은 증거 제출과,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신문권을 보장해 달라며 메아리 없는 무의미한 신문을 강행하는 무모함도 보였다.

### 기소만으로 성과, 기이한 현상

명백한 증거도 없이 돈을 건넸다는 사람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하고 공소사실과 상관없는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유죄의 여론을 형성하려 애쓰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변함 없는 검찰의 모습이다. 변화된 공판중심주의 형사절차에 적응하지 못한 미숙함도 드러났다. 과거에는 피의자의 자백이 들어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만으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정에서의 공격과 방어를 통해서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얻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임이 증명되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한 전 총리를 상처투성이로 만들었지만 검찰 스스로도 만신창이가 되었음을 바로 보아야 한다. □

※ 이 글은 2010년 4월 9일, < 경향신문 >에 함께 실렸습니다.

## 부실수사와 반칙... 검찰의 공판중심주의 표류기

이승훈 기자 (오마이뉴스 정치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무죄로 막을 내렸다. 검찰의 기소부터 선고까지는 108일, 첫 공판에서 선고까지는 33일이 걸렸다. 이 기간 동안 총리공판 현장검증을 포함 14회의 공판이 진행됐고 증인만 20명이 법정에서 섰다. 각 공판들은 또 반전에 반전이 거듭하면서 한편의 법정 드라마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흥미진진하게 진행됐다.

결말도 주인공의 '해피 엔딩'(검찰 입장에서는 언해피 엔딩이겠지만)으로 끝나면서 흥행에도 성공했다. 그 이유로 법정 드라마의 소재가 사상 첫 전직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었다는 점, 또 주인공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다는 점이 거론 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번 재판은 다른 재판들과 달리 사전에 '줄거리'가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보통은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순간 구체적 혐의 사실이 언론에 공표되고 수사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피의자는 언론을 통해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기소 전 이미 재판에서 다뤄질 내용들이 모두 노출되고 만다. 결국 내용 전개가 빠른 재판에는 언론도 대중들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결말에 해당하는 선고 내용도 대부분 보도되지 않거나 거물급 인사들의 경우가 아니면 크게 보도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달랐다. 한명숙 전 총리의 피의 사실이 <조선일보>라는 언론을 통해 공표된 것까지는 같았지만 그 후 한 전 총리 측은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피의 사실 공표에 강력 항의하는 선까지만 대응했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검찰 수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면서 사건의 실체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사건의 전모를 알기 위해서라면 재판에 관심을 가져야 했다. 언론과 대중들이 각 공판을 꼬박꼬박 챙기면서 법정에서 나온 주장과 증언들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은 그래서다. 또 이틀에 한번 꼴로 공판을 진행하는 집중심리가 이루어진 덕에 일일 연속극처럼 하나의 공판이 끝나면

바로 다음 공판의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검찰의 조서와 공소장 보다 법정에서 나온 진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제도가 언론의 보도 관행과 대중들의 재판 관전법까지 바꾼 것이다.

이게 바로 법조계에서 이번 재판을 두고 "검사들이 밀실에서 받은 조서와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고 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판중심주의 정신과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따른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는 첫 번째 이유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재판을 재판답게 한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은 재판의 전 과정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 속기사를 자처한 재판장

이번 재판을 맡은 김형두 재판장은 사법부에서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김 재판장이 공판 중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잠깐만요, 정리 좀 합시다"였다. 그는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 중간 중간 답변 내용을 꼼꼼하게 재확인 하면서 직접 속기록 정리를 해나갔다. 또 신문이나 답변 내용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재판장이 직접 추가 질문을 던져 명확한 답변을 받아냈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정리된 내용을 다시 읽어주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빼놓지 않았다.

또 증인들이 신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신문 내용에 포함된 검찰 조서나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 참고자료는 반드시 법정에서 설치된 스크린에 띄워 보여준 후 재판장이 직접 읽어주면서 질문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유도신문성 질문을 던지거나 질문 내용이 너무 장황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대신 질문에 나서기도 했다.

그만큼 법정에서 나온 증언만으로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김 재판장의 의지는 강했다. 김형두 재판장은 또 법정에서 나온 증인들에게 항상 이렇게 신신당부했다.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을 믿고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위증을 할 경우 법원이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만 말하고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세요. 잘 모르는데 추측해서 말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재판 중 총리공관 경호원이었던 윤아무개씨가 법정 증언 후 위증 혐의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사태가 벌어지자 이 같은 당부는 그 강도가 세지기도 했다. 김 재판장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증인으로 나온 다른 경호원들에 대해서는 신문 도중 “그건 증인 의견 아닌가요, 기억 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세요”라고 충고를 하는 등 더 꼼꼼하게 진술 내용을 점검했다.

이런 신중한 재판 진행 때문에 오전에 시작된 공판은 늦은 밤까지 계속되기 일쑤였다. 연일 이어지는 ‘마라톤 공판’으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측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방청객과 취재하는 기자들까지 매일 강행군을 감내해야 했다.

장점도 있었다. 진술 내용을 반복 확인하는 ‘거북이’ 진행 덕분에 기자들은 법정 진술과 재판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도할 수 있었다.

### 형사소송법 강의장이 됐던 법정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강의에 나서기도 했다. 재판 진행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격렬한 의견 대립을 벌일 때면 김형두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 등을 스크린에 띄워놓고 원칙을 따져나갔다. 때론 법 조문 해석을 놓고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이 의견을 주고 받기도 했다.

혜택을 본 것은 법정에 있는 기자, 방청객들이었다. 법률적 지식이 있든 없든 형사재판의 절차와 원칙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탓이다.

형사소송법 강의의 절정은 한명숙 전 총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부터였다. 법정에는 형사소송법은 물론 형사소송규칙, 법원실무제요, 대법원 판례 등이 차례로 비치졌고 검찰의 신문 절차를 생략할 것인가를 놓고 격렬한 논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후 현행 형사소송법으로 개정이 되는 과정에 대한 소개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권고한 한 취지 등에 설명도 이루어졌다. 하나의 형사소송실무 강좌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권리를 다루는 교양강좌로도 손색이 없었다.

결국 논쟁 끝에 재판부가 검찰에게 신문할 기회를 주되 검찰의 신문 내용을 미리 검토해 형사소송규칙에 어긋나는 신문 내용, 즉 모욕적이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질문, 또 진술을 유도하는 질문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 과정은 지난했다. 예정됐던 공판 기일에 논쟁이 마무리되지 않자 바로 다음날 새로 공판기일이 잡혔고 논쟁은 이튿날까지 계속됐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이번 재판에서의 결정이 앞으로 재판에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검찰의 신문 방식을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문제는 검찰총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고 변호인측은 이번 재판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실무제요에 나온 원칙에 따라 검찰 신문 절차를 생략해야 한다고 맞섰다.

### 재판부의 신문 내용 첨삭 진풍경

법으로 먹고사는 판사, 검찰, 변호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법 조항을 굳이 스크린에 띄우고 그 해석과 적용을 놓고 의견을 주고 받은 건 ‘법에 따른’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재판장의 의지의 표현이었다.

김형두 재판장은 한 전 총리가 피고인 신문권을 행사한 후 검찰이 검찰 신문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맞서자 “가장 정치적인 이 사건을 가장 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법과 재판 진행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하겠다는 뜻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번 재판에 대한 정치적 논란 차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피고인 신문 전 재판부의 질문 ‘첨삭 시도’라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의견을 참조해 검찰의 신문 내용 중 피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질문 등을 모조리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일부 질문이 “~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끝나는 경우에 재판부는 “유도 신문에 해당한다”며 “~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바꾸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꼼꼼하게 질문을 손봤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4시에 시작된 질문 수정 작업은 중간에 짧은 휴식시간을 포함해 3시간 40분여가 걸리는 진통을 겪었다.

한 기자는 이를 두고 전날부터 공방을 벌이고 이렇게 길게 수정할 시간에 차라리 검찰이 신문 내용을 읽었으면 피고인 신문이 진작 마무리 됐을 텐데라는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만큼 법리 공방이 치열했고 신중하고 세심한 수정 작업이 이어졌다.

증거 제출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조항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앞서 언급한 전직 경호원 윤아무개씨가 법정에서 “오찬이 끝나면 총리가 항상 먼저 나왔다”는 증언을 하자 검찰은 부랴부랴 다른 4명의 경호원을 추가로 조사해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려 했다. 하지만 재판부로부터 거부당했다. 김형두 재판장은 “기소 후에는 법관의 면전이 아닌데다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 권한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진술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한 신문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지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자의 동의 없이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나 참고자료는 재판부가 아예 보지도 않았다.

### 검찰의 공판중심주의 표류기

그러나 검찰은 이번 재판을 통해서 이미 도입 5년이 지난 공판중심주의에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김형두 재판장이 검사를 향해 “여보세요”라고 쏘아붙인 후 신문을 제지했던 장면이 그 대표적 사례다.

지난 2일 한명숙 전 총리의 13차 공판. 검사의 신문을 제지하던 김형두 재판장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있었다. 오전부터 밤까지 계속되는 ‘공판 강행군’을 하루걸러 진행하면서도 여유와 미소를 잃지 않았던 김 재판장이 그런 표정을 지어보인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발단은 마지막 공판까지 반복된 검찰의 ‘반칙’이었다.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이 끝난 후 반대신문에 나선 노만석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모욕적 신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단이 모두 빠기로 합의한 질문을 한

전 총리에게 던졌다.

“(제주도 골프빌리지에서) 골프 친 것을 감출 의향이 없다고 했는데 왜 본명이 아니라 가명으로 골프를 했는지 말씀할 수 있나요? (잠시 뜬을 들이다) 그리고 가명으로 한 것은 검찰 수사로 확인돼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인데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검찰이 합의를 깨고 반칙을 하자 당장 변호인단의 항의가 이어졌고 재판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형두 재판장이 검사를 향해 이례적으로 “여보세요”라고 쏘아붙인 것도 이 때였다.

김 재판장은 “어제 그 질문이 모욕적이라고 해서 바꿨는데 그걸 다시 반대신문하면서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만석 검사가 “어제 제가 그 자리에 없어 몰라서...”라는 변명을 내놓자 김 재판장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또 하나 지적할 것은 (한 전 총리가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하는 데 그건 검찰의 생각일 뿐”이라고 면박을 줬다.

사실 검찰의 반칙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됐다. 그 때마다 검찰의 증거 제출 및 증인 신문 방식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어긋난다는 재판부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검찰의 무리수는 계속됐다.

지난 달 15일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식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증인 신문에 이용하려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2006년 12월 20일 문제의 총리공판 오찬에 참석했던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오찬이 끝난 후 4명이 거의 동시에 나왔다”고 증언하자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보고용인 면담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면담할 때는 정세균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증인이 먼저 나왔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담보고서를) 법정에 정식 증거로 내든지 아니면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사용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불과 4일 후인 지난 달 19일 7차 공판에서도 검찰은 증인 신문을 하다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시절 의전비서관이었던 조아무개씨를 상대로 곽영욱 전 사장이 건넸다는 5만달러 사용처를 추궁

하면서 “한 전 총리가 재직하는 동안 해외출장비를 쓰지 않고 모두 모았다 해도 2만 달러에 불과한데 연 10만 달러에 달하는 아들 유학비용을 그걸로 충당할 수는 없겠죠?”라고 묻다가 제지를 당했다.

김형두 재판장은 “유학비용과 출장비를 정확히 계산해서 사실을 물어야지 왜 자꾸 증인의 의견을 묻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태관 검사가 한 전 총리의 해외 순방 일정을 제시하면서 ‘암산’으로 출장비를 계산하려다 “갑자기 계산하려니 힘들다”며 황급히 신문을 마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 검찰의 부실수사

그런데 반칙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바로 검찰의 부실 수사다. 광영옥 전 사장을 비롯한 여러 증인들의 진술 번복은 물론, 재판부로부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재판 중 공소장을 변경한 사례 말고도 부실 수사의 정황은 여럿 있었다.

먼저 검찰은 법정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온 후에야 이를 반박하기 위해 ‘뒷북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기소 전까지 총리공관 경호원 중 윤아무개씨 단 한사람에 대해서만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보통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도 특정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관계자들에게 ‘크로스 체크’(중복 확인)하는 것이 기본인데 검찰은 전직 총리를 기소하면서도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 총리공관의 경호 상황과 경호팀의 동선 등에 대해 조사하면서 단 한 사람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다.

앞서 살핀 것처럼 검찰은 총리공관 경호원 윤씨가 법정에서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하자 나머지 4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권오성 부장검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추가 수사”라고 강변했지만 누가 봐도 분명한 ‘땀 질 수사’였다.

김형두 재판장도 “경호원 4명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다면 기소 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검찰은 하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의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가 광영옥에게 받은 5만 달러를 아들 유학비용 등으로 썼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환전 기록을 꼼꼼히 살피지도 않았다.

검찰은 재판초기부터 지난 2일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한 전 총리와 가족들이 여러 번 해외로 출국하고 아들이 미국 유학을 했음에도 한 전 총리와 가족의 환전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의 환전 기록은 있었다. 다만 검찰이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백승헌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명의의 환전 및 송금 기록이 없다며 5만 달러를 아들 유학비용을 썼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낸 자료에 환전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집중적인 수사를 했다면서 왜 살피지 않았을까요? 대답합니다. 미리미리 살펴서 의심이 가셨다면 혹시라도 이렇게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이 재판절차를 미연에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하는 헛된 허망을 가져봅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사실은 검찰의 형사소송법을 무시하는 증거 제출과 막무가내식 증인 및 피고인 신문, 또 공소장 곳곳에 누수를 초래한 부실 수사로는 강화되는 공판중심주의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검찰이 이번 재판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다. □



## 한명숙 前 총리 재판의 몇 가지 쟁점

금태섭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검사)

유, 무죄를 놓고 검사와 피고인이 격렬한 다툼을 벌였던 한명숙 전(前) 총리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결과는 무죄. 피고인 측의 완승이다. 판결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계산이 한창이다. 특히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혐의 유무를 둘러싼 공방도 여전히 이어진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겠다고 단단히 베풀고 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압수수색을 벌여 논란을 빚은 소위 '신건' 수사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도 주목의 대상이다.

그러나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정치적 여파나 한 개인의 유, 무죄를 떠나서 여러 가지 간단치 않은 쟁점을 안고 있다. 전직 총리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사건의 중요성과 피고인의 신분, 그리고 때마침 다가온 선거로 인해서 이 사건의 재판은 철저히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도 최대한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 형사 절차의 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쟁점을 한편의 기고에서 전부 다룰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쟁점들을 짚어 본다.

### 1. 수사과정은 전부 기록 되는가

판결문에 의하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광영육 전 대한통운 사장은 뇌물액수와 관련해서 적어도 다섯 번에 걸쳐 진술을 바꾼다.

그는 먼저 구속되기 전 수사검사로부터 미국에 송금한 10만 달러의 행방을 추궁 당하자 한 전 총리에게 10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을 한다(첫 번째 진술).

그 후 부장검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검사가) 무서워서

10만불 주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돈을 준 일이 없다고 부인한다(두 번째 진술).

그러다가 2009년 11월 6일 검찰에 구속이 되자 이번에는 한 전 총리에게 3만 달러를 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한다(세 번째 진술).

그러나 그 며칠 후인 2009년 11월 19일 그는 검사에게 "구속되기 전에 변호사들로부터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 제보를 하면 아무래도 검찰이 저에게 선처를 해주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었고, 사실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라고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다(네 번째 진술).

닷새 후인 2009년 11월 24일 광 전 사장은 다시 태도를 돌변해서, 이번에는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준 것이 사실이라고 말을 한다(다섯 번째 진술). 검찰은 이 중 마지막인 다섯 번째 진술을 토대로 한 전 총리를 기소한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록에는 위와 같은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진술 중 마지막 두 개의 진술만 기록이 되어 있다. 재판부나 변호인들이 이러한 진술 변경 과정을 알게 된 것은 법정에서 광 사장이 증언을 하면서 밝혔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굳이 이슝의 '양치기 소년과 늑대'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조사를 받으면서 날마다 진술을 바꾼 사람의 말을, 그 과정은 떼어놓고 결과만을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과거 강압적인 수사가 문제되던 시절에는 진술의 신빙성 문제는 주로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달려있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광 전 사장이 아무런 강요 없이 스스로 자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을 보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광 전 사장의 말이 반드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반

드시 강압에 의해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더라도 꼭 전 사장이 최초로 한 전 총리에게 1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한 진술이나, 3만 달러를 주었다고 한 진술은 거짓말이다. 설마 검찰에서 꼭 전 사장이 검사의 강요에 못 이겨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꼭 전 사장은 강요를 당하지 않더라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최종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주었다고 한 진술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전 과정은 기록되어야 하고, 적어도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용산 참사 재판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검찰은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증거로 사용하려는 자료'만 법정에 제출하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꼭 전 사장의 진술 일부를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꼭 전 사장의 진술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을 요구한 증거거래법 위반 사건 내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들이 결국 재판부로 하여금 꼭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수사 과정의 기록 문제와 피고인의 접근권은 이 사건 이후에도 반드시 다시 검토해보아야 한다.

## 2 야간수사의 문제

꼭 전 사장은 2009년 11월 16일 월요일부터 2009년 11월 24일 화요일까지 9일 동안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조사를 받았다(그 전후에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이 이 기간이다).

월요일인 11월 16일에는 아침 9시에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새벽 1시45분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다음날인 11월 17일에도 아침 9시에 검찰청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다가 밤 12시10분에 구치소에 갔다. 수요일인 11월 18일에는 오후 1시에 소환되어 저녁 7시10분에 구치소로 갔지만 목요일인 11월 19일에는 다시 아침 9시에 불러 나와서 새벽 3시10분이 되어서야 구치소로 돌아갔다. 이날 꼭 전 사장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진술을 한다.

금요일에는 오후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토, 일요일을 쉬고, 월요일인 11월 23일에는 오후 1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다가 밤 12시35분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1월 24일 꼭 전 사장은 마침내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하게 된다. 그 다음 날과 다음 날도 꼭 전 사장은 밤 10시, 밤 11시30분이 되어서야 구치소로 돌아갈 수 있었다.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사망사건이 일어났을 때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만들어서 심야조사를 금지했다. 당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일선청에서는 부장검사들이 야간 조사가 없도록 감독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며칠씩 쉬지 않고, 아침부터 심야에 이르기까지 조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물론 인권보호수사준칙에도 예외 규정이 있다.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사건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한 전 총리의 뇌물 혐의에 대한 공소사건의 완성이 임박한 것도 아니고 꼭 전 사장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심야조사를 한 근거는 조사받는 사람인 꼭 전 사장의 동의 밖에 없다. 물론 검사가 꼭 전 사장이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심야조사를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동의를 받아서 조사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구속이 되어서 검사의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밤에 조사 좀 하자는데 누가 거부를 할 수 있겠는가.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위반하지는 않았거나 혹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기에는 위에서 본 조사 시간은 그 자체로 우리의 수사 현실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검찰은 "17세기 영국에서 진술거부권은 힘없고 박해받는 종교적 소수자의 보호를 위해 출발했는데 21세기 우리나라에서 사회지도층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면서 "적어도 공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지도층은 진실을 주장한다면 당연히 검사신문에 응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같은 말을 검찰에도 해주고 싶다. 과거 심야에 조사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1세기의 검찰이라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왜 아직까지도 진술의 임의성이 문제가 되고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사님이 너희들 전주고 나온 놈들 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인 대라고 그랬고... 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라고 하는데 대해서 검사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 하는 것일까.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중요한 수사과정'에 관하여 검사가 아무런 기록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그 상태에서 꼭 전 사장이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한 부분만을 녹음·녹화한 영상녹화물을 틀어본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진술의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다. 설사 검사가 어떠한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심야조사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조사 시간을 놓고 볼 때 꼭 전 사장의 진술의 임의성에 대해서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 3.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검사의 신문권

한 전 총리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진술을 거부했고, 법정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설사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검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대검찰청이 성명을 발표해서 "진술거부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것이지 검사의 입을 막을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고인에게 질문을 못 하게 한다고 해서 '검사의 입을 막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입을 열고 의견을 말하는 것은 재판 첫 머리의 모두진술과 마지막 단계에서의 의견진술(구형)에서 이루어진다.

이 기회를 통해서 검사는 범행의 입증, 죄질의 경중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서 검사가 어떠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재판진행에 익숙하지 못한 검찰이 '신문'의 성격에 대해서 오해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나 증인에 대한 신문에서 수집되는 증거는 피고인 혹은 증인의 답변 내용이지 그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오히려 질문 그 자체는 법관에게 어떠한 심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검사나 변호인의 질문은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검사나 변호사가 증인신문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자신의 가족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싸움을 해서 폭행죄로 재판을 받는데 마침 아내가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럴 때 증인이야 답변을 하건 말건 '검사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질문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설사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법에 의해 진술거부권이 보장된 피고인이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답변을 하건 말건 수십 개의 질문을 하겠다는 것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증인에게 어쨌든 질문을 퍼붓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다.

'신문'의 성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법정에서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통한 공방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검찰의 문제는 증인신문과정을 통해서도 여러 번 드러났다. 증인신문은 기본적으로 증인이 '경험한 사실'을 묻는 것이지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한 전 총리가 재직하는 동안 공무수행 목적으로 한 해외출국일이 100일이고 출장비 200달러를 받아서 쓰지 않고 모았다 해도 2만 달러에 불과하다."면서 "아들 1년 유학비용 10만 달러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라는 질문을 증인에게 했다.

이 질문은 증인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증인이 '경험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질문의 내용은 그야말로 '검사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으로서 재판을 마무리할 때 검사의 의견으로서 진술해야 하는 것이다.

### 수사검사야 '확신'했겠지만

이 글은 한 전 총리의 유, 무죄를 따져보자는 것이 아니다. 모처럼 최대한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게 이루어진 재판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는지 짚어보자는 것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난 후 몇몇 신문에서는 취재기자들의 사회 형식으로 "평범한 피고인이자라면 이렇게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사건 재판이 과거에, 그리고 현재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 현실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재판은 보다 이 사건 재판에 가까워질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문제된 쟁점들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

정치권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 간에 적어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한 전 총리를 기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확신했다면 치밀한 수사와 흠 잡기 어려운 공판 수행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사안의 성격상 정치적 시비가 일어나기 쉬운 사건이다. 재판부에서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재판을 하고 집중심리를 한 것도 그 때문이다.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상을 해서 교과서적인 수사와 재판 관여를 했어야 한다. 위에서 본 수사과정의 기록 누락, 조사 시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고인에 대한 장외에서의 비난 등을 생각해 볼 때 검찰이 과연 이 사건을 교과서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1심 판결 이후 검찰에서는 <한명숙 前 총리 사건 판결의 문제점>이라는 문건을 배포하면서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이 정말 이 사건 1심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남의 탓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 이 글은 2010년 4월 23일, <프레시안>에 함께 실렸습니다.